

WTO/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 총괄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질의처 운영은 산업 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1996년 2월 공산품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질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007년 2월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털사이트 Know TBT(www.tbt.kr) → TBT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tbt@kats.go.kr)

통보문 통계

- 대상기간: 2011.3.7~3.11
- TBT 통보문 건수: 10개국 41건
(기술규제 제·개정: 35건, 추록·수정문: 6건)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오만	12	15(4%)
브라질	2	34(9%)
태국	9	19(5%)
한국	1	6(2%)
중국	7	24(6%)
스위스	1	2(1%)
미국	4	38(10%)
가나	1	1(0%)
EU	3	28(7%)
아랍에미리트	1	7(2%)
합계	41	380(100%)

*추록문, 수정문 비포함 전체 통보문수: 274건

- 동 예고안 내 기재된 측정 변환, 색선 교차 참조 등에 관한 오류를 수정함.
- 동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예정임.

나. [중국] 인증기관 관리 방법(G/TBT/N/CHN/798)

- 정부의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 설립, 행동 강령, 감독, 행정 관리, 법적 책임에 대해 명시

다. [중국] 상용 냉장기기의 에너지 성능 최대한계치와 에너지 효율등급- Part1: 원격 응축 유닛이 있는 냉장기기 (G/TBT/N/CHN/793)

- 4장의 내용은 강제조항이며, 기타 내용은 권장사항임.
- 원격 냉장 진열대의 에너지 소비 계수 한계와 관련된 내용은 강제 규정임.
- 본 표준은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 사용되는 원격 응축 유닛이 장착된 상업용 냉장 기기에 적용됨.
- 본 규정은 소매용 자동판매기나 냉장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 내용

가. [미국] 저속 자동차의 백미러 안전, 단계적 보고 요건 (G/TBT/N/USA/605/Corr.1 & Add.1)

- 2010년 12월, 후진시 발생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한 백미러 안전요건에 관한 규제를 입안예고한 바 있음.

라. [EU] 납, 카드뮴 추가 제외를 위한 2002/95/EC 유럽 의회 규격 부속문 개정안(G/TBT/N/EEC/373)

- 기술, 과학적 평가를 포함하여 2002/95/EC 규격 부속서에 2개 이상의 제외조항을 추가함.